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명칭) 이 법인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(이하 "서울대학교"라 한다)라 한다.
- 제2조(목적 등) ①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으로서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진리를 탐구하고, 교육과 연구를 통하여 새로 운 지식을 창출하며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번영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.
 - ② 서울대학교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- 1. 탐구정신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 인재육성
 - 2. 학문의 발전과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연구역량의 강화와 연구지원
 - 3.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사회봉사
 - 4. 그 밖에 서울대학교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
- 제3조(소재지 등) 서울대학교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동에 두고, 필요한 곳에 대학·대학원·분교·부속시설·부설기관 등을 둘 수 있다.

제2장 기관

제1절 임원

- 제4조(임원) ① 서울대학교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 - 1. 이사 15명(이사장, 총장 및 부총장 2명을 포함한다)
 - 2. 감사 2명
 - ② 총장은 부총장 중 2명을 이사로 지명한다.
 - ③ 총장, 부총장인 이사 2명 및 감사 1명은 상근으로 하고, 그 밖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.
- 제5조(이사) ① 이사는 대학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안목이 있는 인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한다. 다만, 「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

- 하 "법"이라 한다)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은 이사회에서 선임되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이사 (이하 "당연직 이사"라 한다)로 본다.
- ② 이사회는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이사 후보대상자를 초빙하기 위한 이사후보초빙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③ 이사후보초빙위원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이사(그 중 2분의 1 이상은 외부인사로 한다)와 2명 이내의 이사가 아닌 내부인사로 구성한다.
- ④ 이사회는 이사후보초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- 제6조(이사의 임기) 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 - ② 이사의 임기가 이사회 개최일 전에 만료될 때에는 후임 이사가 선임되어 임기가 개시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.
 - ③ 임기 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이 생긴 후 개최되는 최초의 이사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임한다.
- 제7조(이사장) ①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주재한다.
 - ③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그 후임자를 지체 없이 선출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8조(총장) ① 서울대학교 총장(이하 "총장"이라 한다)은 서울대학교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,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, 학생을 지도한다.
 - ②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 - ③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9조(총장추천위원회) ① 총장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기 위하여 총장 추천위원회를 둔다.
 - ② 총장추천위원회는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되, 외부인사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- ③ 이사회는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내의 인사를 추천하고, 평의원회는 나머지 인사를 추천한다.
- ④ 총장추천위원회는 3명의 총장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한다.
- ⑤ 총장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장 임기만료 5개월 전에 구성하여 대통령이 신임 총장을 임명할 때까지 운영한다.
- ⑥ 총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10조(총장후보대상자의 모집) ① 총장추천위원회는 공모, 추천, 초빙 등 의 방법으로 총장후보대상자를 모집할 수 있다.
 - ② 총장추천위원회는 총장후보대상자를 초빙하기 위한 총장후보초빙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- ③ 총장후보초빙위원회는 총장추천위원회 위원 중 9명 이내로 구성하되, 외부인사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 - ④ 총장추천위원회는 총장후보초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- 제11조(감사) ① 감사 중 1명은 대학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을 받아, 다른 1명은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각각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 - ② 감사가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제13조제1항에 따라 후임자를 추천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
 -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 - 1.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
 - 2. 이사회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-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
 - 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- 5.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 - ④ 감사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또는 내부인력을 지원받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- ⑤ 감사는 이사 또는 서울대학교 교직원을 겸할 수 없다.

- ⑥ 감사의 감사범위, 감사기준과 절차, 감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12조(임원의 신분보장)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.
 - 1. 법령이나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의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경우
 - 2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서울대학교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 한 경우
 - 3. 심신상의 장애, 일신상의 사정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현저히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이사회가 인정 한 경우

제2절 이사회

- 제13조(이사회의 구성과 소집) ① 이사회는 서울대학교에 소속된 내부인 사인 이사 7명과 외부인사인 이사 8명으로 구성한다.
 - ② 이사회는 총장이나 감사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 - ③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의 목적,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이사와 감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장이 긴급한 사항이라고 판단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이항에 규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제14조(이사회의 심의·의결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 - 1. 총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
 - 2.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
 - 3.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에 관한 사항
 - 4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- 5. 제47조에서 정한 중요 재산의 취득,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- 6. 대학 또는 대학원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- 7. 주요 행정조직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- 8.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
- 9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10. 서울대학교 학교규칙(이하 "학칙"으로 한다)과 평의원회, 총장추천위원회, 학사위원회, 재경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- 11. 대학발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후원에 관한 사항
- 12.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에 관한 사항
- 13. 법령, 정관, 그 밖의 규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
- 14.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이사회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각 호 중 개별사안을 정하여 평의원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있다. 이 경우 평의원회의 의결은 이사회의 추인에 의하여 효력을 가진다.
- 제15조(이사회의 정족수 등) ① 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 또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② 제14조제1호, 제2호(해임에 한정한다), 제6호, 제9호, 제12호에 관한사항의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③ 당연직 이사의 경우에는 해당 이사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.
- 제16조(의결제척사유)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- 1.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으로 임원 자신에 관한 사항
 - 2.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
- 3. 특정 임원과 이해관계가 상충될 우려가 있다고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 제17조(이사회의 운영 등) ① 총장은 이사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서울대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임명한다.
 - ② 이사회의 의사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은 의장 및 출석이사 2명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하며, 그 사본을 이사와 감사에게 각각배부하여야 한다.
 - ③ 이사회의 의사결과는 공개한다. 다만, 이사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

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

④ 이사회는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3절 심의기구

- 제18조(평의원회) ① 서울대학교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회를 둔다.
 - ②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 - 2. 법령, 정관, 그 밖의 규정에 근거하여 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
 - 3. 교육 · 연구 및 학사 운영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
 - 4. 대학·대학원 또는 학부·학과 및 중요 연구시설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
 - 5. 학칙, 평의원회에 관한 규정, 그 밖의 교육·연구에 관한 중요 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- 6. 교직원 복지에 관한 중요 사항
 - 7. 그 밖에 총장, 이사장, 평의원회 의장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
- 제19조(평의원회의 구성) ① 평의원회는 서울대학교 교직원 4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하되, 47명 이내의 교원과 3명 이내의 직원을 평의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교원인 평의원은 각 대학(원)별로 선임하는 인사와 평의원회 의장이 평의원회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위촉하는 인사로 구성한다.
 - ③ 제2항의 각 대학(원)에서 선임하는 평의원의 각 대학(원)별 정수는 평의원회에서 정하며, 평의원회 의장이 위촉하는 평의원은 3명 이내로한다.
 - ④ 직원인 평의원은 직원을 대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.
 - ⑤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두며,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⑥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20조(평의원회의 운영 등) ① 평의원회의 정기회는 매 학기 2회 개회하

- 되, 임시회는 총장, 평의원회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 개회한다.
- ② 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21조(학사위원회) ① 서울대학교의 교육과 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위원회를 둔다.
 - ② 학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연도별 대학운영계획 중 교육 · 연구와 관련된 사항
 - 2. 학생의 입학과 졸업에 관한 사항
 - 3. 교육과정, 성적, 학위 등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
 - 4.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
 - 5.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
 - 6. 교수평가에 관한 사항
 - 7. 연구비 관리 등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 - 8. 연구윤리, 연구감사, 대외 연구협력에 관한 사항
 - 9. 대학·대학원 및 학부·학과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
 - 10. 교육기본시설, 지원시설, 연구시설, 부속시설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
 - 11. 학칙, 학사위원회 규정, 그 밖의 교육·연구에 관한 중요 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- 12. 그 밖에 총장 또는 이사회가 교육·연구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
- 제22조(학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) ① 학사위원회는 총장과 25명 이상 35명 이하의 서울대학교 교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총장은 부총장, 학(원)장 및 주요 보직자와 교육과 연구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교원을 학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.
 - ③ 학사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, 위원장은 총장이 겸임하고 부위원장은 총장이 부총장 중에서 지명한다.
 - ④ 그 밖에 학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23조(재경위원회) ① 서울대학교의 재무경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경위원회를 둔다.

- ② 재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연도별 대학운영계획 중 재무경영과 관련된 사항
- 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3. 대학발전을 위한 기금조성 및 후원에 관한 사항
- 4. 입학금, 수업료 등 학생의 금전적 부담에 관한 사항
- 5. 별도 규정으로 정한 일정한 사업규모 이상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
- 6. 제52조에서 정한 수익사업의 결산에 관한 사항
- 7.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에 관한 사항
- 8. 재무회계 관련 규정 및 재정적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- 9. 임원과 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
- 10. 그 밖에 총장 또는 이사회가 대학의 재무경영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
- 제24조(재경위원회의 구성과 운영) ① 재경위원회는 교직원과 외부인사 등 25명 이상 35명 이하로 구성하되, 외부인사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 - ② 총장은 부총장, 처장 등 주요 보직자와 재무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인사 및 평의원회 등이 추천하는 인사를 재경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- ③ 재경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④ 그 밖에 재경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25조(기초학문진흥위원회) ① 서울대학교에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기초학문진흥위원회를 둔다.
 - ② 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·육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지원 ·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 - 2. 계획시행을 위한 재원확충 및 집행에 관한 사항
 - 3. 계획시행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
 - 4. 지원 · 육성이 필요한 분야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
- 5. 지원 · 육성이 필요한 분야의 교육 및 연구조직의 개편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총장 또는 이사회가 대학의 기초학문진흥과 관련하여 심의 를 요구하는 사항
- 제26조(기초학문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) ① 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부 총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기초학문 등 필 요한 분야의 학내외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- ② 기초학문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이 겸임한다.
 - ③ 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, 총장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.
 - ④ 기초학문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27조(장학·복지위원회) ① 서울대학교에 학생의 학비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학·복지 시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장학·복지위원회를 둔다.
 - ② 장학·복지위원회는 학생의 장학·복지 시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 - 2. 시책의 시행을 위한 재원 확충 및 집행에 관한 사항
 - 3. 시책의 시행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총장 또는 이사회가 학생의 장학·복지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
- 제28조(장학·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) ① 장학·복지위원회는 부총장 1명, 대학원생 1명, 학사과정 학생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관련 분야에 대한 학내외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- ② 장학·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이 겸임한다.
 - ③ 장학·복지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, 총장은 중요 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.
 - ④ 장학·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4절 행정 · 교육조직

- 제29조(부총장 등) ① 총장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2명 이상 5명 이하의 부총장을 둔다.
 - ② 부총장은 대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장의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
 - ③ 총장의 보조기관·보좌기관으로 15개 이내의 처·국·실 등을 둘 수 있다.
 - ④ 서울대학교의 직제, 사무분장,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30조(교육조직 등) 서울대학교의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
 - 1. 단과대학 · 대학원 · 학부 및 학과의 설치
 - 2. 지원시설 · 연구시설 등의 설치
 - 3. 단과대학(원)에 두는 교수회의 구성 및 권한
 - 4. 단과대학(원)의 장의 선임
 - 5. 그 밖에 교육 · 연구조직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

제3장 교직원 등 제1절 교위

- 제31조(교원의 임면) ① 총장은 교수, 부교수, 조교수 등 교원을 임면한다.
 - ② 총장은 겸임교원, 명예교수, 초빙교원 등을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.
- 제32조(교원의 인사) ① 서울대학교의 교원(총장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 은 근무기간, 급여, 근무조건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.
 - ②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. 다만, 탁월한 업적과 성과를 낸 교원은 심사를 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- ③ 교원의 임용·정년·보수·복무 등 교원인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33조(교원인사위원회) ① 교원의 인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.
 - 1. 교수, 부교수, 조교수 등의 신규임용, 재계약임용, 승진임용, 정년보 장임용에 관한 사항
 - 2. 부총장, 학(원)장 등 임명에 관한 사항
 - 3. 그 밖에 총장이 교원인사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

-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부총장을 포함하여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25명 이상 3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 중 여성위원은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.
- ④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
- 제34조(교원의 징계) ① 총장은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,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징계를 하여야 한다.
 - 1.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
 - 2. 정관, 학칙 및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
 - 3.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
 - 4. 그 밖에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
 - ② 교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, 양정,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35조(교원징계위원회) ① 교원의 징계 등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교 원징계위원회를 둔다.
 -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부총장을 포함하여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2절 직원 및 조교

- 제36조(직원의 임면 등) ① 총장은 서울대학교 직원을 임면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.
 - ② 직원은 시험성적, 근무성적, 경력 등 능력을 평가하여 임용한다.
 - ③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.
 - ④ 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원인사위원회를 두며, 직원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37조(직원의 보수 등) ① 직원의 보수는 일반적인 임금수준, 물가수준,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정한다.

- ② 직원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지식, 기술 및 응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.
- ③ 총장은 직원의 경력개발과 업무능력의 신장을 위하여 직원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④ 직원의 임용·정원·보수·복무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38조(직원의 징계) ① 총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,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징계를 하여야 한다.
 - 1.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
 - 2. 정관, 학칙 및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
 - 3.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
 - 4. 그 밖에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
 - ②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, 양정,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39조(직원징계위원회 등) ① 직원의 징계 등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직원징계위원회를 둔다.
 - ② 직원징계위원회는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 직원의 징계사건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직원징계재심위원회를 둔다.
 - ④ 직원징계위원회와 직원징계재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40조(조교) ① 교육·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교를 둔다.
 - ② 총장은 근무기간, 보수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조교를 임면한다.
 - ③ 조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.
 - ④ 조교의 임용, 정원, 징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3절 학생

제41조(학생의 권리 등) ① 서울대학교 학생은 우수한 교육·연구 환경에 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- ② 서울대학교 학생은 학생의 지위에 상응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- ③ 학생의 자격,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
- 제42조(학생의 활동과 지원) ① 서울대학교 학생은 지성과 품성의 조화로 운 발전과 심신의 단련을 위하여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수행 한다.
 - ② 서울대학교 학생은 실천적 지성과 리더십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한다.
 - ③ 총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학생의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적극 지원 하여야 한다.

제4장 학교규칙 등

- 제43조(학칙의 제·개정) ① 총장은 학칙 제정안을 발의하고 7일 이상 공고한 후 학사위원회와 평의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공포한다.
 - ② 학칙을 개정하는 경우 총장은 학칙 개정안을 발의하고 학칙에서 정한 공고, 심의,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를 공포한다.
- 제44조(학칙의 기재사항)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
 - 2. 수업연한 · 재학연한,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
 - 3. 입학, 재·편입학, 휴·복학, 모집단위간 이동·전과, 자퇴·제적· 유급, 수료·졸업 및 징계
 - 4. 학위의 종류 및 수여
 - 5. 교육과정의 운영,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
 - 6.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
 - 7. 등록 및 수강신청
 - 8. 공개강좌
 - 9. 교원의 교수시간
 - 10.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
 - 11. 장학금 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
 - 12. 수업료 · 입학금, 그 밖의 비용징수
 - 13. 학칙개정 절차

- 14. 그 밖에 법령 및 정관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
- 제45조(규정의 제정 등) ① 총장은 이 정관이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.
 - ② 총장은 제반 규정의 체계적인 심의 ·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5장 자산과 회계

제46조(재산 등) ① 서울대학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재산
- 2.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재산, 그 밖의 출연금과 기부금
- 3. 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보조금
- 4. 그 밖에 서울대학교가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일체의 재산 ② 제1항의 재산 중 교육·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법령에 근거하여 관리하되, 그 외의 재산 등을 포함하여 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47조(중요재산의 처분제한) 서울대학교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재산(제1호와 제2호는 그 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)을 매도·증여·교환·용도변경 및 담보의 제공을 하려고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교육·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매도·증여·교환·용도변경 및 담보의 제공이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에 한한다.
 - 1. 토지와 건물
 - 2. 교육 또는 연구에 중요한 기계·기기·장치
 - 3. 그 밖에 이사회가 의결로 정하는 중요재산
- 제48조(법인회계) ① 서울대학교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법인회계를 설치한다. 다만, 수익사업 등의 운영을 위하여 법인회계 내에 다시 회계단위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.
 - ② 법인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- 제49조(자본 등) ① 자본은 출연기본금(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 중에서 법인에 계속적으로 투입·운용되는 출연된 자산의 가액을 말한다), 기타기본금(당해 항목의 성격으로 보아 기본금에 해당하나 출연기본금 이외의 것으로 분류되는 기본금을 말한다), 잉여금으로 구분한다. ② 그 밖에 자산과 부채의 평가, 자본의 증감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50조(기금의 운영 등) ① 서울대학교는 학교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.
 - ② 기금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 - ③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51조(경비재원)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출연금·보조금, 수업료·입학금, 기금에서 발생한 과실, 수익사업의 수입, 그 밖의 수 입금과 차입금으로 충당한다.
- 제52조(수익사업) ① 서울대학교는 교육·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 - 1. 교육 서비스업
 - 2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
 - 3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
 - 4. 출판업
 - 5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
 - 6. 농업, 임업 및 축산업
 - 7. 부동산업 및 임대업
 - 8. 위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
 -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
 - 1. 사업의 명칭과 별도의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그 사무소의 소재지
 - 2. 사업의 종류
 - 3. 관리인의 주소 · 성명
 - 4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 - ③ 서울대학교는 필요한 경우 재산을 출자하여 수익사업을 위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제6장 관련법인 등

- 제53조(관련법인) ① 서울대학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법인, 조합 등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총장은 서울대학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법인, 조합 등에 대하여 지도·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제54조(부설학교) ① 서울대학교에 「고등교육법」 제45조에 따라 「초· 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부설학교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총장은 법 제33조제2항에서 정한 종전의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과대학에 부설된 다음 각 호의 초·중등학교를 지도·감독한다.
 - 1.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
 - 2.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
 - 3.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여자중학교
 - 4.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
 - ③ 제1항 및 제2항의 부설학교에 대한 지도·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

제7장 해산 또는 합병

- 제55조(해산 또는 합병) 서울대학교가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여 해산하 거나 다른 국립대학법인과 합병하려고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,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 아야 한다.
- 제56조(잔여재산의 귀속) 서울대학교가 해산하였을 때에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에 귀속된다.
- 제57조(청산인) 서울대학교가 해산하였을 때에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,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8장 보칙

제58조(비밀준수의 의무) 서울대학교의 임원이나 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제59조(산업재산권의 귀속)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이 그 직무수행 중에 이 룩한 발명 또는 실용실안 등에 부여되는 산업재산권은 별도의 법령이나 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대학교에 귀속된다.
- 제60조(분교의 설치) 서울대학교의 분교 설치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61조(정관의 변경)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고 교육과학기 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62조(공고방법) 법령 또는 이 정관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전국을 보급 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.

부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임원선임에 관한 특례) ① 서울대학교의 최초의 이사(당연직 이사 는 제외)와 감사는 제5조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추천을 받아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임하되,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② 제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이사수의 2분의 1 이내의 이사는 그 임기를 1년으로 할 수 있다.
- 제3조(학사위원회에 관한 특례)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의 최초 의 학사위원회는 총장·부총장·학(원)장·기초교육원장·교무처장·학생처장· 연구처장·기획처장 및 입학본부장으로 구성한다.
- 제4조(재경위원회에 관한 특례)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의 최초의 재경위원회는 부총장·교무처장·학생처장·연구처장·기획처장 및 사무국장, 총장이 임명하는 교직원 10명, 총장이 위촉하는 외부인사 10명으로 구성한다.
- 제5조(회계연도에 관한 특례) 서울대학교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최초의 회계연도는 설립등기일로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.
- 제6조(평의원에 관한 경과조치) 종전의 서울대학교 평의원회를 구성하는 평의원은 법인설립 당시 남은 임기 동안 서울대학교의 평의원으로 선임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.
- 제7조(임명직 보직자에 관한 경과조치) 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이 임명한

부총장, 학(원)장, 처장 등 보직자들은 법인설립 당시 직제의 개폐가 없는 이상 남은 임기 동안 서울대학교의 보직자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.

- 제8조(신분전환 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종전의 서울대학교 소속 교 직원 중 법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 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인사, 복무, 징계, 보수 등에 관하여 법인 교직 원에 대한 규정이 제정되기 전까지 「교육공무원법」, 「국가공무원 법」 등 종전에 적용된 법령을 따른다.
 - ② 종전의 서울대학교 소속 직원 중 법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립 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인사, 복무, 징계, 보 수 등에 관하여 법인 직원에 대한 규정이 제정되기 전까지 기성회직원 규정, 단체협약 등 종전에 적용된 규정을 따른다.
- 제9조(기금교수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이 임용한 기금교수를 법인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기금교수의 범위, 절차, 계약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 다만, 별도의 규정이 제정되기 전까지 기금교수는 「서울대학교 기금교수 운영규정」등 종전에 적용된 규정을 따른다.
- 제10조(조교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이 임용한 조교 는 남은 근무기간 동안 법인의 조교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.
 - ② 제1항이 적용되는 서울대학교의 조교는 인사, 복무, 징계, 보수 등에 관하여 법인 조교에 대한 규정이 제정되기 전까지 「교육공무원법」과 「서울대학교 전임교수 및 조교임용규정」 등 종전에 적용된법령과 규정을 따른다.
- 제11조(학칙 및 규정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) 종전의 서울대학교 학칙 및 규정은 관련 법령과 이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새로운 학칙 및 규정이 제정되기 전까지 계속 효력을 가진다.
- 제12조(관련법인에 관한 경과조치) 별표 2에 기재된 법인, 조합 등은 제5 3조에 의한 법인, 조합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.
- 제13조(정관작성자)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을 위하여 설립준비위원 전원은 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이 정관을 작성하고 2011년 12월 15일에 각각 기명날인한다.

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 오 연 천

위 원 김 용

위 원 노태돈

위 원 문용린

위 원 박명진

위 원 변대규

위 원 서정돈

위원서지문

위 원 손경식

위 원 송광수

위 원 안병우

위 원 왕규창

위 원 이 승종

위 원 이준규

위원이홍구

(가, 나, 다 순)

[별표 1]

<u>정원표(</u>제36조제3항 및 제40조제3항 관련)

| 명칭 | 정원(명) | 비고 |
|----|-------|----|
| 직원 | 1,200 | |
| 조교 | 500 | |

[별표 2]

<u>관련 법인 목록(</u>부칙 제12조 관련)

| 명칭 | 등록번호 | 법인성립연월일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서울대학교병원 | 110133-0000634 | 1978.07.15. |
| 서울대학교치과병원 | 110171-0029767 | 2004.08.30. |
|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| 114371-0009224 | 2004.05.12. |
|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| 114371-0001276 | 2001.04.21. |
|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 | 114322-0000035 | 1967.02.05. |
| 재단법인 사회과학정보화교육연구재단 | 114322-0000209 | 1995.05.30. |
| 재단법인 서울대학교경영대학교육연구재단 | 114322-0000125 | 1990.02.22 |
| 재단법인 서울대학교공과대학교육연구재단 | 114322-0000077 | 1986.06.18. |
|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교육연구재단 | 130122-0001361 | 1989.08.24. |
|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법학발전재단 | 114322-0029887 | 2002.12.31 |
| 재단법인 서울대학교약학대학교육연구재단 | 114322-0000051 | 1983.03.22. |
| 재단법인 서울대학교의과대학교육연구재단 | 110122-0002584 | 1980.12.13. |
| 재단법인 서울대학교치의학대학원교육연구재단 | 110122-0026930 | 1994.04.01. |
|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보건연구재단 | 110122-0002336 | 1979.02.19. |
|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과학기술원 | 135822-0004959 | 2007.06.07 |
| 사단법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| 114321-0000045 | 1961.10.11. |